

산업재산권 심판제도의 개선 방안

1977. 4. 1일 특허청이 발족한 이래 운용되어 오고 있는 현행 산업재산권 심판체제에 대하여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현재 특허청내의 심판소·항고심판소의 심판을 거쳐 이에 불복하는 경우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토록 되어 있는 심급구조에 대해 위헌 논의가 제기된 것은 차치하고라도, 행정부내에서의 심판체제(심판소, 항고심판소)와 사법부내에서의 재판체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청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온 것이다.

이에따라 사법부에서는 『대법원』 1심체제를 → 『서울고법·대법원』의 2심 체제로 전환한다고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특허청에서는 그간 심층연구 및 각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현행 산업재산권 심판체제를 개선코자 단계적 추진방침을 세웠다.

특허청의 의견 수렴과정과 개편방향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1. 그간推進한 經緯와 意見收斂 過程

가. 推進經緯

1946년 특허법이 제정된 이후 특허심판체제는 그 기본골격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으나 근년에 일부에서 위헌론 제기(현재 헌법재판소에 4건 계류중)

이와 별도로 대법원의 『사법제도 발전위원회』(93. 11.~94. 2)에서 2심의 『서울고법』에서 대법원의 前審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그간 특허청에서는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90. 3)된 『특허심판제도연구협의회』를 통한 선진외국제도의 조사, 연구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94. 1. 24) 및 대법원의 입장 등 각계 의견을 광범하게 검토, 수렴

나. 그간 提起되었던 意見

인사의 전문화 등 현행체제의 보장운영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특허청내에 설치된 『특허심판제도연구협의회』).

전문법원인 고등법원급의 특허법원을 설치하여, 일반 법률판사와 기술판사가 합의하여 재판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변리사업계, 산업계)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 前審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대법원)

다. 特許廳 意見 收斂 및 立場 定立

• 공청회

—일 자 : 1994. 1. 24.

—주관 및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대회의실)

—참 석 : 산업계·변리사업계·특허청 및

대법원

-회의 내용 : 특허법원·기술판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主潮

- 대법원과 개혁방안에 관한 협의
- 변리사회·산업계·청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 특허청의 입장 定立

-현행 심판체제의 보강
-장기적으로는 특허법원, 기술판사 제도 도입

※ 대법원의 최종 입장('94. 4. 16. 발표)

-특허청의 항고심판의 심결에 대하여, 대법원이 아닌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특허법원·기술판사제도 도입문제도 대해 난색표명

2 特許廳의 産業財産權 審判體制 改竊 方向

기본적으로 “서울고등법원·대법원”의 2심제가 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여 행정부(특허청) 내의 심판제도는 단심제로 하고, 발명가들의 소송경제를 기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3년의 유예기간 후, 1998년부터 항고심판소에 심판소를 흡수하여 『특허심판원』으로 개편

가. 특허심판원 설립전

- 현행 심판소, 항고심판소 체제 유지
- 특허심판의 적정성 향상을 위한 심판관 임용요건 및 연수교육의 강화
- 심판관 및 심사관중 희망자는 국내외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의 수학기회 부여 추진 (국비지원, 학사편입 등에 대해 총무처·교육부와 협의)

나. 특허심판원 설립(기본구상)

(1) 방 향

- 현재는

-특허청의 항고심판소 前審으로 심판소가 있으나,

-앞으로 심판소를 항고심판소에 흡수하여 『특허심판원』의 단심체제로 전환

- 신설되는 특허심판원은 특허청 산하의 독립기관(별도직제)으로 함으로써, 심판의 독립성·공정성을 향상 → 특허행정상의 “심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흡점에 대한 자기치유물을 최대한 제고

- 산업재산권에 관한 심판제기 건수에 부응하여 심판관의 적절한 증원, 심판관의 임용요건의 강화 및 심판절차의 개선으로 심판처리 기간의 단축 도모

(2) 시 기 : 1998. 1. 1. 발족

금년부터 특허심판원 신설을 위한 관련법규의 개정, 심판관 등 인원의 확보, 심판에 관련된 절차 기타 제도의 정비 등 준비작업 추진

(3) 기구 및 운영

• 조직

-산업재산권 종류(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및 기술분야(전자·전기, 기계, 화학 등)를 감안한 상설합의부의 설치

1) 상설합의부의 수 : 전문분야별 사건수를 고려하여 결정

2) 심리 합의제 : 기술심판관 및 법률심판관으로 구성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행정심판사건도 담당하는 부서(예 : 법률부)와 심판관 평가 및 심판판례연구를 담당하는 부서(예 : 심판지도부)도 설치 운영

• 심판관의 자질향상

-임용요건강화 : 심사경력을 현재 2년 → 향후 5년

-아울러 이공계 출신 고급인력(박사학위 소지자, 변리사, 변호사 등) 또는 전문가(산업디자인 분야 전공자 등)의 임용방안도 강구

- 특히 앞으로 설립할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의 인사교류에 대비해 특허청의 심사관을 특허심판관 수준으로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

도 추진

-전문심사관으로서 소관분야에서 장기근무하는 기반 확립

-교육훈련의 강화(국제특허연수원, 연구소 등)

• 심판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심판관련자료의 전산화와 사무자동화도 추진

• 심판관 증원에 따른 심판기간의 단축
-심판사건수를 고려한 심판관의 합리적 증원 추진 : 심판처리 기간(심판 1년, 항고심판 2년)을 외국수준으로 단축(1년 미만)

다. 기대효과 및 전망

• 분쟁의 조기해결

-분야별 심판합의부의 전문성 제고로 심판에 대한 승복율이 높아지고 분쟁이 특허심판원에서 대부분 해결되도록 함으로써 고등법원에의 항소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될 것임

※ 심판청구 현황('93)

1) 심판 청구	1,620 件
2) 항고심판청구	
당사자 사건	476 件
거절불복사건	2,678 件
소 계	3,154 件
3) 대법원 상고	194 件

※ 한·일간 비교

1) 일본 특허청의 『심판부』→ 『동경고등재판소』에의 항소율('92년도 사정계 기준) : 3.

1%

2) 한국 특허청의 『항고심판소』→ 『대법원』 상고율('93 사정계 기준) : 10.7%

• 독립성

-심판원을 특허청내 별도의 기관(별도 직제)으로 함으로써 심판의 독립성 유지

• 적정성 : 합의체 구성원중 기술심판관의 경우

-현재는 1내지 2인만이 해당분야 전공을 한 심판관이나

-향후에는 심판관 모두가 해당분야 전공자로 구성됨으로써 심판의 적정성 향상

• 신속·경제성

-현재 특허청내 2단계 심판구조(심판소, 항고심판소)에서 1단계 (특허심판원)로 간소화함으로써 처리기간의 단축 및 심판 비용의 경감

3. 特許法院 設置 推進

장기적으로는 산업계, 발명가, 기술계 및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야의 학계 등에서 희망하고 있는 『특허법원·기술판사』제도가 도입되어 현대기술의 속성(고도화·첨단화·전문화·기술수명의 단축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토록하여, 발명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발명의욕과 분위기를 진작시켜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에 내실있게 기여할 수 있는 특허법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고자 함. <♣>

안

제124회 발명 교실

내

일시 : 1994년 6월 11일(토) 오후 1시 30분

장소 : 발명장려관(KOEX별관 2층) <교재무료 제공>